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발의】



2025. 02. 17.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73호로 2025년 2월 3일 임헌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자료로 변경(안 제2조)

나.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2.4.~2025.2.9.)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일부개정 취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 「지방세징수법」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용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u>결손자료</u> 의 제공	제2조(지급대상)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u>정리보류 자료</u> 의 제공

-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지방세기본법」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용어를 정비함.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u>포상금 지급신청서</u> <table><tr><th colspan="3">신 청 자</th><th colspan="4">징수(세원 발급)액</th><th>청구액</th><th>거래은행</th><th rowspan="2">비 고</th></tr><tr><th>소속(주소)</th><th>성 명</th><th>생년월일</th><th>건수</th><th>합계</th><th>본세</th><th>가산금</th><th>(원)</th><th>계좌번호</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신 청 자			징수(세원 발급)액				청구액	거래은행	비 고	소속(주소)	성 명	생년월일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원)	계좌번호											〈별지 제1호 서식〉 <u>포상금 지급신청서</u> <table><tr><th colspan="3">신 청 자</th><th colspan="4">징수(세원 발급)액</th><th>청구액</th><th>거래은행</th><th rowspan="2">비 고</th></tr><tr><th>소속(주소)</th><th>성 명</th><th>생년월일</th><th>건수</th><th>합계</th><th>본세</th><th>납부지연 가산세</th><th>(원)</th><th>계좌번호</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신 청 자			징수(세원 발급)액				청구액	거래은행	비 고	소속(주소)	성 명	생년월일	건수	합계	본세	납부지연 가산세	(원)	계좌번호										
신 청 자			징수(세원 발급)액				청구액	거래은행	비 고																																																		
소속(주소)	성 명	생년월일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원)	계좌번호																																																			
신 청 자			징수(세원 발급)액				청구액	거래은행	비 고																																																		
소속(주소)	성 명	생년월일	건수	합계	본세	납부지연 가산세	(원)	계좌번호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세 결손처분 제도의 개선¹⁾은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 정리”로 구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한 것임.
- 납세의무를 소멸시킨다는 “결손처분”²⁾의 사전적 의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해당 개정 사항 반영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³⁾은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임.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기 법령의 개정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구⁴⁾에서는 아직 별지 서식 용어 정비(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인 자치법규 개정이라고 판단됨.

1)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개정 (2022.1.28. 일부개정, 2022.7.29. 시행)

2) 결손처분(缺損處分) 『법률』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지방세기본법」 개정 (2020.12.29. 일부개정, 2023.1.25. 시행)

4) 서울시 내 중랑구(2024.7.11. 별지서식 일부개정), 종로구(2024.11.15. 별지서식 일부개정)에서만 별지 서식의 “납부지연가산세” 용어가 개정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